#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21

발의연월일: 2025. 3. 25.

발 의 자:조계원·이광희·민병덕

주철현 • 홍기원 • 김문수

유준병 · 임오경 · 허종식

문금주 • 박해철 • 허성무

권향엽 • 이재관 • 박지원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작품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거나 불명확한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는 등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금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 도록 함으로써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41조).

#### 법률 제 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하여서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을 "국가기관등의소속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으로, "하여서는"을 "하거나차별행위를 지시하여서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기관등"을 "국가기관등의"로, "작성하거나"를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해하여서는"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배제하거나"를 "배제하거나 배제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되고"로 한다.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해를 지시한 자
- 2.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지시한 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성을 지시한 자
-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해를 지시한 자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작을 지시한 자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제 또는 강요를 지시한 자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해한 자
- 2.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성을 한 자
-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해를 한 자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작을 한 자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제 또는 강요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또는	②
예술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는	
폭행, 협박, 불이익의 위협, 위	
계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	
하여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u>방해하는 행</u>	<u>방해하거나 방해</u>
<u>위를 하여서는</u> 아니 된다.	<u>를 지시하여서는</u>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
① (생 략)	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②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u>관은</u>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및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	
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	
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 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 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하다.

제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① <u>국가기관등</u>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u>작성하거나</u>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u>하거나 차별행위를 지시하</u>
<u>여서는</u>
세9조(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
해 금지) ① <u>국가기관등의</u>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 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 략)

④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 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u>배제하거나</u>, 선 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 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과태료) <신 설>

2
발
해하거나 방해를 지시하여서는
③ (현행과 같음)
<b>4</b>
배제하거나 배제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에41조(과태료) <u>① 다음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를 지시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2. (생략)

- 2.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지시한 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 성을 지시한 자
-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 해를 지시한 자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작을 지시한 자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 제 또는 강요를 지시한 자
- <u>(2)</u> -----

-----.

-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 <u>해한 자</u>
- 2.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행위를 한 자
-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작 성을 한 자
-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 해를 한 자
-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작을 한 자
- 6.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배 제 또는 강요를 한 자
- <u>7. · 8.</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